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42호 2021. 6. 10(금)

공 고

- 남원시공고 제2022-1266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----- 1
- 남원시공고 제2022-1274호 공시송달공고----- 2
- 남원시공고 제2022-1295호 도로지정공고----- 4
-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-20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----- 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○ 남원시 공고 제 2022 - 1266호

도로 지정 변경 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7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(변경)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m ²)	변경사항		
							변경전	변경후	비고
2022-19	남원시 왕정동 430-1(대)	조*익	2022-건축과- 신축신고-89	12	2.25	31	왕정동 430-1(대) (624m ²), 도로지정 면적(27m ²)	왕정동 430-1(대) (620m ²), 도로지정 면적(31m ²)	도로지정 면적 및 대지면적 변경

남원시 공고 제2022 -127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1. 공고기간 : 2022. 6. 3. ~ 2022. 6. 20. (15일간)
- 2. 공고장소 :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,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소유자 현황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 : 2022.6.2.)	임○규	남원시 노암동 516-2	건축물 부존재	남원시 노암동 516-2	주1 목조 주택 34.6㎡

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(☎063-620-659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6. 2.

남 원 시 장

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2 - 1295호

도 로 지 정 공 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7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22-2 4	남원시 신촌동 345(답)	이*민	2022-건축과- 신축신고-121	49	6	290	345	290	이*민 진*원 안*수 박*필

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-20호

『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9일

남 원 시 장

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가. 관람객 편의 증진, 권익침해 관람료 및 연령기준 개정
-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관람료 및 연령기준 개정
 - 과학관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
 -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(전라북도 법무행정과-7657(2021.6.29.) 반영
 -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휴관일 삭제
- 나 항공우주천문대 내 바리스타 로봇 설치에 따른 체험요금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(관람객 연령) 변경 (안 제3조제2호, 제3호, 제5호)
- 나. 휴관일 삭제 (안 제6조제1항제1호)
- 휴관일 1월1일, 설날, 추석 → 삭제
- 다 관람료 변경 (안 제7조제1호, 안 별표 1)
- 라 바리스타 로봇 체험 요금 신설 (안 제7조제1호, 안 별표 2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6. 9. ~ 6. 29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2년 6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관광시설사업소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: 우 55796 / 남원시 양림길 48-63 (항공우주천문대)

다. 의견 제출 방법

: 서면, 이메일(coolboyss@korea.kr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 담당자 (☎063-620-898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안 1부.

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6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관광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기준 범위에 부합하게 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와 연령기준을 반영하고, 신규체험 프로그램(바리스타 로봇) 요금 신설, 휴관일 규정 현행화 등 관람객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맞게 연령기준 반영 (안 제3조)
 - 어린이: 7세~12세, 청소년: 13세~19세, 어른: 20세~64세
- 나. 휴관일 삭제 (안 제6조제1항제1호)
 - 1월 1일, 설날, 추석 → 삭제
- 다.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관람료 변경 (별표 1)
- 라. 바리스타 로봇 체험 요금 신설 (별표 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규칙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2. 6. . ~ 2022. 6. . 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 - 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6세”를 “7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18세”를 “19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19세”를 “20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8. 5. 4>

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(제7조 관련)

구 분	어 른	청소년·군인	어린이	비 고
개 인	4,000원	2,000원	2,000원	1시간 기본 프로그램 운영
단 체	3,000원	1,500원	1,500원	
할인(연계)	2,800원	1,200원	1,200원	

※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
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[별표 2]

남원항공우주전문대 프로그램 요금표 (제7조제1항 관련)

구 분	내 용				비 고	
	어 른	청소년· 군인	어린이	단 체		
1박 2일 가족캠프	12,000원	14,000원	11,000원	해당없음		
1박 2일 청소년캠프	12,000원	14,000원	11,000원	해당없음		
심화프로그램	8,000원	6,000원	4,000원	어 른	7,000원	2시간 기준
				청소년 · 군인	5,000원	
				어린이	3,000원	
양부일구 만들기 체험(해시계)	5,000원				선 택 형 프로그램	
T-50 만들기 체험 (종이비행기)	3,000원				선 택 형 프로그램	
자이로 가상현실체험	3,000원				선 택 형 프로그램	
패러글라이딩 가상현실체험	3,000원				선 택 형 프로그램	
플라잉젯 가상현실체험	3,000원				선 택 형 프로그램	
연간 회원제	50,000원					
바리스타 로봇	아메리카노	어린이 음료		아이스크림		
	2,000원	1,000원		1,000원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어린이”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<u>6세</u>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“청소년”이란 13세 이상 <u>18세</u>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·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“어른”이란 <u>19세</u>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제6조(휴관)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1월1일, 설날, 추석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7</u> <u>세</u> -----.</p> <p>3.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20세</u> ----- -----.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휴관) ① ----- -----.</p> <p>1. <삭 제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붙임 관련 법령

■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제10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

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1. 6. 7.]

■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7조(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3. 4. 24.]

■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 <개정 2013.4.24>

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(제7조 관련)

1. 관람료

구분	금액		비고
	개인	단체 (30명 이상)	
어른	4천원	3천원	20세 ~ 64세
청소년	2천원	1천5백원	13세 ~ 19세
어린이	2천원	1천5백원	7세 ~ 12세
노인	2천원	1천5백원	65세 이상
장애인	2천원	1천5백원	

국가유공자	2천원	1천5백원	
-------	-----	-------	--

2. 과학기술자료 이용료

구분	수량	금액
사진 및 비디오 촬영	1회	2만원
사진 원판 이용	1장	2천원

비고: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항공우주전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